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A, ACG-RA, ACG-RB, ACF, ACF-RA, ACI, ACI-RA, GKA-RA, GMA, JFA, JFA-RA, KLA, KLA-RA

책임 기관: Chief Operating Officer; Chief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Chief of District Operations; Chief Academic Officer

차별 금지, 형평성, 문화적 이해력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I. 목적

Montgomery 카운티 Board of Education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의 구현을 담당하는 적절한 책임 사무소를 지정하고 모든 연방정부, 주 정부, 지역정부의 차별 금지법을 준수를 보장합니다.

차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II. 정의

A. *고용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이란 Board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임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포함) 또는 종교, 그 밖에 인지된 특성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1964 년 시민권법 제 7 조를 위반하여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B. *관계자(party in interest)*는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사람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 또는 불만, 이의제기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사람들을 포함합니다.

III. 이슈

Board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는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높은 성과를 높이는 높은 기대치의 문화를 개발하고 육성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안전하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업무 및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모든 학생이 성취수준을 높이고, 성취도의 격차를 크게 해소하기 위해 이를 개발하고 육성한다는 교육위원회의 기대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책 ACA 에 정의된 "인식된 특성(perceived characteristics)"에 기초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차별은 학생, 직원, 가족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MCPS 의 노력과 지역사회가 오랫동안 기울여 온 노력의 가치인 모두에 대한 형평, 포용, 관용의 성취를 방해합니다.

IV. 행정절차

A. 차별에 관한 불만, 이의제기

1. MCPS 는 신고된 모든 차별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 및 지원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 MCPS 는 직원 및 제삼자의 주장을 포함한 조사의 기밀성, 해당 법률의 준수, MCPS 의 이러한 불만 사항의 조사와 해결에의 책임을 유지합니다.

3. 개인의 성실한 차별 불만을 제기 또는 참여 및 차별불만 조사에의 협조로 개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B. 학생 차별에 대한 학생의 불만제기

1.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Compliance Unit 의 책임자(chief)는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약속을 이행하고[1], 해당 연방, 주, 지방의 차별 금지법 준수를 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 Board Policy JHF,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oard Policy JHF,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에 책정된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차별에는 왕따/불링/학교폭력, 희롱, 협박행위가 포함됩니다. MCPS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신고 절차는 MCPS Regulation, JHF-RA, *약자*

[1]2023 년 3 월 2 일부터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Unit 는 혐오 편향 사건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만 사항은 MCPS Form 226-5, *Hate-Bias Incident Reporting Form* 양식을 통해 보고되어야 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추정 피해 학생의 학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은 Board Policy ACF, *학생의 성적 비행과 성희롱(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에 책정된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차별은 성희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MCPS 성희롱(sexual harassment) 신고 절차는 JHF-RA,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차별에 대한 우려 또는 불만 사항은 Board Policy KLA, *일반 질문과 불평사항에 관한 답변(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 및 MCPS Regulation KLA-RA, *일반의 문의 및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5. Title VI 또는 Title IX 위반을 주장하는 학생은 언제든지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OCR)에 불만(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OCR 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 또는 후에, MCPS 에 불만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
   OCR 전자 문제 신고/불만 신고 양식(Electronic Complaint Form)
   (http://www.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Lyndon Baines Johnson Department of Education Building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1100

C. 고용인 차별에 관한 불만, 이의제기

1.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OHRD)는 직장 내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약속을 이행하고, 해당 연방, 주, 지방 고용 차별 금지법에 대한 MCPS 의 준수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차별 혐의는 연방 및 주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DCI)의 인력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조사합니다.

2. 고용 차별을 주장하거나 MCPS 직원이 그러한 차별적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DCI 에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 신고 절차는 아래의 섹션 III. C 에서 다룹니다.)

   a) 고용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은 양식 230-39, *Complaint of Discrimination or Workplace Bullying* 을 작성하거나 DCI 에 이메일로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DCI@mcpsmd.org) 또는, 직원들은 해당하는 경우 DCI 에 문제를 제기할 책임자/감독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b) 불만 사항 제기자가 이 양식 230-39, *차별 또는 직장 괴롭힘 불만/이의제기(Complaint of Discrimination or Workplace Bullying)*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DCI 인사과 담당자(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는 DCI 조사를 시작할 때, 이의 제기자와 협의하여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조사

   a) 주장되는 행동이 직원 차별인지를 결정하게 될 때, 주장되는 사건이 일어난 전후 사정을 포함한, 전체 상황 모두의 사건 기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b)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개인을 동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2]

   c) 60 일 근무일 이내에 담당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본 규정에 따라 검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

      (2) 혐의를 조사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통지합니다.

   d) 검토 결과 불만 사항이 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만 사항은 불만 사항에 명시된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불만 사항 제기자에게 반환됩니다.

[2] "선택한 다른 개인"에는 직원과 동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직원단체 교섭부서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e) 당사자들이 일정과 근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설득력 있는 이유의 경우, 시간을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직원 차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ing)

a) 인사과 규정 준수 담당자의 결정에의 이의제기는 chief operating officer(COO)에게 할 수 있습니다.

b) 이의 제기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 일 근무일 이내에 이의 제기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c) 이의 제기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조사 문서와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숙련된 청문관이 배정됩니다.

d)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접수한 후 10 일 근무일 이내에 COO 청문관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의 제기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조사 문서 및 주장을 검토합니다;

(2) 청문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의 제기자와의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3) 이의제기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제공합니다.

(4) 이의제기자(complainant)에게 결과를 알리고, 교육위원회 Policy BLB, *Rules of Procedure in Appeals and Hearings* 와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30 일 달력일 이내의 이의제기에 관한 주법의 권리를 알립니다.

5. 고용 차별 혐의는 MCPS Regulation GKA-RA, *Administrative Complaint* 에 설명된 행정 불만 처리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

6. 이 규정에 규정된 고용차별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의 제기자가 Maryland Commission for Civil Rights(MCCR)로 mccr.maryland.gov 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거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로 Baltimore District Office 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a)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b) 고용인은 개정된 Title IX of the 미국 교육법(Education 공 Amendments Act of 1972)에 관한 이의제기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의 Office for Civil Rights 에 제출 및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7. 징계 조치

차별 행위를 한 직원, 보복 또는 보복 행위를 한 직원 및/또는 고의적인 무고를 한 직원에 대한 결과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징계조치에는 서면 질책, 전문적 카운슬링, 재배치, 강등 또는 좌천, 정직과 해고가 포함됩니다.

C. 위에 명시되지 않은 커뮤니티 일원이 제기하는 MCPS 내의 차별에 대한 우려 또는 불만 사항은 Board Policy KLA, *일반 질문과 불평사항에 관한 답변(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 및 MCPS Regulation KLA-RA, *일반의 문의 및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Inquiries and Complaints from the Public)에 명시된 정식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V. 커뮤니케이션, 보고 및 전문적 학습

A. 무차별 성명

1. *MCPS 차별 금지 성명*은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요약하고 주, 연방정부 요구사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2. *MCPS 차별 금지 성명*은 MCPS 웹사이트의 웹페이지에 눈에 띄도록 개시됩니다.

3. *MCPS 차별 금지 성명*은 2023년 6월 30일 이후에 발행된 MCPS 교육구 전체 문서 중 Graphics & Publishing Services(EGPS) Unit이 발행하는 3페이지 이상의 모든 교육구 전체 간행물에 포함됩니다.

4.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OGC)는 2023 년 6 월 30 일 이후의 교육위원회 정책과 MCPS 규정의 채택, 개정, 수정, 검토에 *MCPS 차별 금지 성명*을 포함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EGPS가 발행하는 문서 또는 OGC가 발행한 정책과 규정은 현재의 *MCPS 차별 금지 성명*을 갱신하게 되며 문서 번역 프로토콜에 따라 수정, 개정 또는 재인쇄합니다.

B. 교육감/대리인은 Policy ACA 및 연방 및 주 정부의 차별 금지법 시행을 위한 목적, 목표, 전략 및 일정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1. Office of Shared Accountability는 추세를 분석하고 교육위원회 Policy ACA, *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에서 표명한 약속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차이를 파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 Maryland 법에 따라, 데이터 수집, 보고서 또는 교육위원회의 분석을 위한 내부 문서에는 MCPS에 등록된 학생의 최소 5%를 구성하는 각 인종 및 민족 그룹에 대한 범주가 포함되며, 이 범주는 다른 범주와는 다릅니다.

관련 자료:

MCPS Culture of Respect Compact[3]; Student Code of Conduct in MCPS; MCPS Employee Code of Conduct; MCPS Guidelines for Respecting Religious Diversity; MCPS Guidelines for Student Gender Identity; U.S. Constitution U.S.C.), Amendment 14;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42 U.S.C. § 2000d et seq.;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as amended, 42 U.S.C. § 2000e et seq.;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20 U.S.C. § 1681 et seq.; 3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106, 34 CFR Part 100;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20 U.S.C. § § 1400-1487;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29 U.S.C. § 794;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42 U.S.C. § 12131 et seq.; Section 1981 of the Civil Rights Act of 1866, 42 U.S.C. § 1981;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29 U.S.C. §§ 621-634; Equal Pay Act of 1963, 29 U.S.C. § 206(d); Equal Rights Amendment to the Maryland Constitution's Patient Protection Affordable Care Act, 42 U.S.C. § 18001 et seq.; Maryland

[3]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Local 500, Montgomery County Association of Administrators and Principals 간의 문화 존중 협약*

Constitution Declaration of Rights (Article 46); Annotated Code of Maryland, State Government Article, Title 20, Human Relations;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4-141, §6-104, and §7-424.1;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COMAR) §13A.05.01; Montgomery County Racial Equity and Social Justice Act Amendments to Montgomery County Code §1A-201, §2-64A, §2-81C, §27-83, and §33A-14.

규정 변경사: 새 규정, 2005 년 7 월 5 일; 2023 년 2 월 21 일 갱신.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조상,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역할, 성 표현, 성 취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 포용성, 수용을 창출,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를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MCPS 학생*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Academic Officer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208, Rockville, MD 20850 240-740-3230 RACU@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 Room 55,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시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시다.

2022년 6월